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2837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이주현, 윤대웅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인 담당변호사 이어령

변 론 종 결 2021. 3. 26.

판 결 선 고 2021. 5. 1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2017. 5. 19.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2017. 5. 19.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F, G,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991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8. ‘피고 F, G,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채권양도

- 1) C은 2016. 9. 7. D 주식회사(이하, 회사 이름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그 소유의 서울 은평구 H 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161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E가 2017. 4. 1. 위 매매계약에 관한 D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 2) C은 2017. 5. 19. 위 F의 언니인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채권의 일부인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D과 E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C의 무자력

C은 이 사건 채권양도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부

-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C, F,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I의 가압류등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단50431)를 말소시키기로 약정하였는데, C은 피고를 통해 이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채권액 6,000만 원이 E로부터 J을 통해 I자동차회사에 지급되어 위 회사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E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6,000만 원의 지급채무는 이미 소멸하였다.

그러나 D과 E가 2020. 8. 11. C 등에게 보낸 내용증명(갑 제10호증)에 첨부된 ‘대조동 매매대금 정산내역 정리’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에게 양도된 이 사건 채권액 6,000만 원은 D과 E의 채무로 그대로 남아있는 사실, 반면 피고가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E가 J에 송금한 6,000만 원(을 제4호증)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이 2017. 5. 19. 이 사건 채권양도와 별개로 J에 양도한 183,000,000원의 매매대금채권(갑 제9호증)에서 공제된 사실(‘대조동 매매대금 정산내역 정리 순번’ 26, 27, 33 참조)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위 채권의 채무자인 D, E에게 위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허명욱

양도 채권

- 채권자 :
- 채무자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양도채권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서울 은평구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채권 중 60,000,000원

이상.

